

#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9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6. 7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2005.12.30 개정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목적 (안 제1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·공시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나. 위원회 기능 (안 제2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심의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

다. 위원회 회의 (안 제5조)

-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제6항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

나. 기 타

- 1)신·구조문 대비표
- 2)입법예고(2006.5.12~6.2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·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·공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4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
5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5조제2항중 “정기회의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”를 “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”로 하고,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 · 공시<br>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 · 공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-----.     |   |   |   |
| 제2조(기능) <u>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|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   |   |   |
| 1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5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<u>정기회의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</u>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</p> | <p>제5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정기회의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-----<br/>-----.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<u>〈단서 삭제〉</u></p> |